

# 공원시설이용 운영규정

개정 2018. 1.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(이하 '재단'이라고 한다)이 서울특별시(이하 '시'라고 한다)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숲 공원시설이용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공원시설이용료)

1. 공원 공간별 시설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.
2. 공간별 공원시설이용은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된 '붙임1'의 공간별 공원 이용 금액을 따른다.
3. 공원이용자는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(유희공간: 사용일 15일 전 / 야외공간: 사용일 30일 전)까지 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이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원시설이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 후 사용일 전일까지 공원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3조(공원시설이용료)

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원시설이용료를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할 수 있다.,

1. 공원시설이용료 전액감면
  - 가. 시에서 주최 ·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
  - 나. 재단에서 주최 ·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
2. 기타 서울숲위원회가 공원시설이용 운영 목적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## 제4조(공원이용허가 기준)

재단은 공원시설이용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공원시설이용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, 목적의 적합성·일정의 수용 가능성·행사 내용의 공공성 및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원시설이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.

1. 공원시설운영 목적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의 공원시설이용을 신청하는 경우
2.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로 공원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공원의 관리,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3. 공원 운영에 있어 방호 및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, 소란, 선동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

우려가 있는 경우

4. 상품,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. 다만, 주된 목적이 공익적인 행사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및 이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숲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.
5.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원시설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공원시설이용허가 이후 행사진행에 있어 일방적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
  - ① 재단은 공원시설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공원시설이용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의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숲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.

#### **제5조(공원시설이용 취소 및 계약 해지)**

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원시설이용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원시설이용료 반환은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1. 공원시설이용허가 후 공원시설이용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,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
2. 공원시설이용 허가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공원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
3. 공원시설이용자가 공원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
4. 공원 공간별 사용수칙과 공원시설이용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재단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#### **제6조(공원시설이용 계약의 체결)**

공원시설이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원시설이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**제7조(공원시설이용계약 취소)**

1. 공원시설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원시설이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.
2. 공원시설이용자가 공원시설이용 취소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한 경우 다음의 <붙임 2>의 구분에 따라 공원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#### **제8조(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)**

1. 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 내에 현수막, 홍보 안내 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

입에 대하여 재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재단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

2. 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시설사용 종료 후, 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철수로 인해 공원의 기존 시설물,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.
3. 재단은 공원시설이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,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원시설이용자가 부담한다.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4. 공원시설이용자는 재단의 사전허가 없이 공원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.

### **제9조(원상복구)**

1.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2. 옥외 잔디지역은 이용 전 잔디보호용 매트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, 이용 후 잔디가 현저하게 손상된 경우 이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 
세부사항은 '서울숲 공원시설이용 신청서-1.사전협의 및 조치사항-④번 규정에 따른다.
3. 이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서울숲공원은 이를 대신 처리하고 해당비용을 청구한다.

### **제10조(사용시설의 정리)**

1. 사용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설치한 시설물을 반출하여야 한다
2. 사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실시하는 대기, 준비, 철거 작업 시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.

### **제11조(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)**

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시설이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 단, 공원시설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공원시설이용허가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, 주관, 후원 등 공원시설이용사용 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**

1. 공원시설이용자는 공원시설이용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2. 공원시설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①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타 이용자의 공원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.
- ② 공원 내에서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- ③ 공원시설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- ④ 공원시설이용기간 중(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)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재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공원시설이용자는 준비, 사용,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반출하여야 한다.

### **제13조(변경규정의 적용)**

이 규정 변경일 이전에 발생한 공원시설이용허가 및 계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**제14조(규정 미숙지 및 규정 위반시의 책임)**

이 규정의 미숙지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원시설이용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공원시설이용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.

### **제15조(법정사항 준수)**
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

## 서울숲 공원시설 이용료

1. 공원시설 현황

구분	장소	면적	부대시설	용도
<b>유휴공간</b> 10:00-17:00 (운영시간 외 사용은 협의 필요)	커뮤니티센터 1층 전시실	179.9㎡	프로젝터, 테이블25, 의자40	전시, 체험행사
	커뮤니티센터 2층 가온방	32.4㎡	프로젝터, 테이블8, 의자16	16명 미만 세미나, 워크숍
	커뮤니티센터 2층 마루방	35.4㎡	온돌마루, 싱크대	20명 미만 세미나, 워크숍
	습지생태원	40.5㎡	프로젝터, 테이블12, 의자24	
<b>야외공간</b> 9:00-18:00 (운영시간 외 사용은 협의 필요)	가족마당	10,000㎡	무대, 전기시설(5KW미만)	공연, 행사, 체험행사
	야외무대	4,000㎡	무대, 전기시설	공연, 행사

2. 공원시설장소사용 공원이용료

(시간대별 공원이용료 | 최종납부금액은 공원이용료 총액을 확인)

구분	항목	시간	금액(원)	VAT(10%)	공원이용비 총액 (원/VAT포함)	비고
가족마당	평일	2	414,400	41,440	455,840	2시간 기준 ※ 운영시간: 9:00-18:00 ※ 운영시간 외 (야간사용은 협의 필요)
		3	518,000	51,800	569,800	
		4	621,600	62,160	683,760	
		5	725,200	72,520	797,720	
		6	828,800	82,880	911,680	
		7	932,400	93,240	1,025,640	
		8	1,036,000	103,600	1,139,600	
		9	1,139,600	113,960	1,253,560	
		10	1,243,200	124,320	1,367,520	
		주말	2	538,720	53,872	
	3		673,400	67,340	740,740	
	4		808,080	80,808	888,888	
	5		942,760	94,276	1,037,036	
	6		1,077,440	107,744	1,185,184	
	7		1,212,120	121,212	1,333,332	
	8		1,346,800	134,680	1,481,480	
	9		1,481,480	148,148	1,629,628	
	10	1,616,160	161,616	1,777,776		
야외무대	평일/주말	2	100,000	10,000	110,000	2시간 기준

		3	125,000	12,500	137,500	※ 운영시간: 9:00-18:00 ※ 운영시간 외 (야간사용은 협의 필요)
		4	150,000	15,000	165,000	
		5	175,000	17,500	192,500	
		6	200,000	20,000	220,000	
		7	225,000	22,500	247,500	
		8	250,000	25,000	275,000	
		9	275,000	27,500	302,500	
		10	300,000	30,000	330,000	

※ 세금계산서 발행

### 3. 유희공간 공원시설이용료

(시간대별 공원시설이용료 | 최종납부금액은 공원시설이용료 총액을 확인)

구분	항목	시간	금액(원)	VAT(10%)	공원이용비 총액 (원/VAT포함)	비고
전시실	평일·주말 (주간기준)	2	30,000	3,000	33,000	※최소 2시간부터 예약 가능 ※ 운영시간에만 대관 가능
		3	37,500	3,750	41,250	
		4	45,000	4,500	49,500	
		5	52,500	5,250	57,750	
		6	60,000	6,000	66,000	
		7	67,500	6,750	74,250	
가온방 마루방 습지생태원	평일·주말 (주간기준)	2	20,000	2,000	22,000	※ 운영시간 : 10:00-17:00 ※ 운영시간 외 야간사용은 협의 필요
		3	25,000	2,500	27,500	
		4	30,000	3,000	33,000	
		5	35,000	3,500	38,500	
		6	40,000	4,000	44,000	
		7	45,000	4,500	49,500	

※ 공원시설이용료 시간에는 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을 원칙



## 서울숲 공원시설 이용료 취소 환불 규정

### 1. 공원시설 이용료 취소 반환

구분	장소	기간	반환율
유휴공간	커뮤니티센터 1층 전시실	10일전	100% 반환
		9일전 ~ 6일전	80% 반환
		5일전 ~ 1일전	60% 반환
	커뮤니티센터 2층 가온방	10일전	100% 반환
		9일전 ~ 6일전	80% 반환
		5일전 ~ 1일전	60% 반환
	커뮤니티센터 2층 마루방	10일전	100% 반환
		9일전 ~ 6일전	80% 반환
		5일전 ~ 1일전	60% 반환
	습지생태원	10일전	100% 반환
		9일전 ~ 6일전	80% 반환
		5일전 ~ 1일전	60% 반환
야외공간	가족마당	45일전	100% 반환
		30일전 ~ 21일전	80% 반환
		20일전 ~ 1일전	60% 반환
	야외무대	30일전	100% 반환
		15일전 ~ 11일전	80% 반환
		10일전 ~ 1일전	60% 반환
공통	사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공원시설이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(남은 일수의 50% 반환)		